

# 울 산 지 방 법 원

## 제 11 형 사 부

### 판 결

사 건 2025고합511 가스방출  
피 고 인 A (65\*\*\*\*-1), 자영업  
검 사 김수희(기소), 안정환(공판)  
변 호 인 변호사 김○정(국선)  
판 결 선 고 2026. 4. 17.

### 주 문

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### 이 유

#### 범 죄 사 실

피고인은 2025. 10. 19. 00:53경 울산 북구 통○\*\*길, \* 효○○○아파트 1\*\*동 5\*\*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, 배우자와 다툼 후 화가 나 가스밸브와 가스레인을 연결하는 가스호스를 칼로 절단하고, 같은 가스밸브를 45도로 열어 도시가스를 약 1분간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.

## 증거의 요지

### 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#### 1. 112신고사건처리표

1. 수사보고서(임장시 모습), 수사보고서(피의자 주거지 최초 진입 상황), 수사보고서  
(112신고녹취파일 첨부)

#### 1. 현장사진, 녹취파일 CD

## 법령의 적용

### 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

형법 제172조의2 제1항

### 1. 정상참작 감경

형법 제53조, 제55조 제1항 제3호(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)

### 1. 집행유예

형법 제62조 제1항(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)

## 양형의 이유

### 1.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: 징역 6월~5년

2. 양형기준의 미적용: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.

### 3. 선고형의 결정: 징역 10월/집행유예 2년

피고인은 배우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있는 가스레인지 가스호스를 절단하고, 가스밸브를 돌리는 방법으로 가스를 방출시켰다. 당시는 새벽시간이었고, 범행 장소는 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었으므로,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, 피고인의 죄책이

가볍지 않다.

다만,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, 피고인은 범행 당시 스스로 112에 전화하여 '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가스를 틀려고 생각 중이다. 들어오실 때 조심하시고.'라고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알렸는데, 타인의 생명·재산에 피해를 가할 구체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,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인적·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,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,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, 성행, 환경, 범행의 경위,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.

재판장	판사	박동규	_____
	판사	하대경	_____
	판사	조근주	_____